

제 호

이의신청 결정서

신청인
처분청

위의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
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결정합니다.

주 문

이 유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